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24

발의연월일: 2024. 8. 7.

발 의 자: 박용갑·한준호·강유정

한민수 • 박홍배 • 황정아

권칠승 • 문진석 • 장철민

문금주 • 이용우 • 추미애

조승래 • 박 정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한 전기설비의 안전점검과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도 급증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화재는 온도가 1천도까지 빠르게 치솟는 열폭주 현상과 폭발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현실적으로 화재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건물의 지하주차장 등옥내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 및소방인력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건물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화수조·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옥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함)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1호의2 각각 신설).

법률 제 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옥내에 전기자동차(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화수조·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 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에 대한 안전조치) ①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옥 내에 전기자동차(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화수조・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의 연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절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u><신 설></u>

2. ~ 10. (생 략) ②·③ (생 략)

주기・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과태료) ①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히
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u>한 자</u>
2. ~ 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